

미국 위탁아동의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송민경

(펜실베이니아대학 아동정책연구소)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친권상실이 신고된 위탁아동의 입양률 추이를 살펴보고,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위탁보호와 입양에 관한 패널데이터 FY1999-FY2002를 이용하여 1998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2개 주를 추출하여 총 26,895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건사 분석의 Kaplan-Meier 분석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친권상실신고 이후 소요되는 위탁기간에 따른 입양률 추이와 위험 입양배율(hazard ratios for adoption)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친권상실신고 이후 3개월-19개월까지 입양률이 급속히 증가하다가 20개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입양여부와 관련한 주요 요인으로는 백인아동일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선입양가족, 도시소재의 위탁보호일 경우, 양부모 위탁가족, 또는 인종적으로 동일한 위탁부모에 의해 위탁보호 될 경우 입양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지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신체학대나 성학대를 경험한 경우, 친부모의 양육능력부족으로 위탁보호 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입양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친권상실 이전에 발생한 위탁보호 원인이 친권상실 이후에도 입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입양촉진방안으로 친권상실신고 이후 제공된 위탁서비스 활용과 적극적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요보호아동의 친권개입의 정책적 방향과 항구적 보호마련을 위한 함의와 제언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위탁보호, 친권상실신고, 입양, 항구적 보호마련, 비례적 위험회귀모형

* 본 연구 결과는 2007년 미국 사회복지학회 (Society for Social Work and Research)에서 발표되었음.

1. 서론

한국에서 현재 가족해체와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방임으로 공식적으로 사례만으로도 2001년 약 2,000여건에서 2005년에 4,600여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들 아동학대·방임의 7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이것은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환경이어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아동학대 노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37-49) 현재 아동권리 보장차원에서 기존에 친부모에게 부여된 절대적 친권에 대한 반론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김유미, 1997; 오정수·이혜원·이호균·정익중, 2006; 이호균, 2006). 특히, 아동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발달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적 친권개입의 필요성(김유미, 1997; 오정수 외, 2006; 이호균, 2006)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요보호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친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위탁보호 확산과 아울러 입양제도의 활용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위탁아동들의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미국 아동복지정책에서 정책적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는 “아동최우선 이익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한 가족복귀노력에 대한 항구적 보호 마련의 대체방안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친권상실·입양’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요보호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공적 친권개입의 근본적인 정책적 당면 목적은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보호마련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제도 실시에 따른 제도적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이해되어질 수 있으리라 여긴다.

현재 미국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위탁보호된 요보호아동의 친권상실이 신고된 이후 입양을 통해 항구적 보호마련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Berry, 1998; Lindsey and Schwartz, 2004; Lowry, 2004; Schmidt-Tieszen and McDonald, 1998). 1980년대 이후 가족보존 정책은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서 위탁아동에 대한 가족복귀노력은 최우선 실천방안으로서 실행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위탁아동의 급격한 급증과 장기위탁아동의 상승으로 인한 가족보존정책의 실천에 있어서 당위성과 유효성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장기위탁에 따른 아동발달의 저해한 영향에 대한 논란과 장기위탁아동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커감에 따라 가족복귀를 전제로 한 무제한적인 위탁기간의 연장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개정된 입양과 안전한 가족 촉진법(Adoption and Safety Families Act, 이후 ASFA)에서는 1년 이상 가족복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탁아동이 친부모와의 재결합이 어려운 경우, 가족복귀와 더불어 입양을 고려한 친권상실을 함께 권고하고 있다. 특히, ASFA에 있어서 친부모의 친권상실에 대해서는 1980년에 개정된 입양권장 및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이후 AACWA)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친권개입의 절차가 권고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양을 전제로 한 위탁아동의 친권상실의 실태와 이에 따른 항구적 보호 마련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증적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 있다. 특히, 위탁보호 된 아동이 친부모와의 재결합이 일정기간 내에 어렵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항구적 보호마련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 친권상실이 얼마나 입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실천적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탁보호와 입양에 관한 패널데이터(Adoption and Foster Care Data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 이후 AFCARS), FY 1999-FY2002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위탁아동의 친권상실과 입양의 동태적 양상, 특히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까지 소요되는 위탁보호기간을 고려하여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ASFA 개정이후 카플란 마이어분석(Kaplan-Meier Estimation)을 이용하여 친권상실신고 이후 위탁기간에 따른 입양률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의 연령과 인종에 따른 입양률 차이가 ASFA 개정 이후에도 현존해 있는지에 대해 카플란 마이어 층화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비례적 위험회귀모형의 하나인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친권이 상실된 위탁아동의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갖는다.

- 첫째, 친권상실선고를 경험한 위탁아동의 아동특징, 위탁보호 원인 및 위탁서비스 특징을 분석한다.
- 둘째,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따른 위탁아동의 입양률 추이를 분석한다.
- 셋째, 위탁아동의 연령과 인종에 따라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따른 입양률 추이를 비교한다.
- 넷째, 위탁아동의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2. 위탁아동의 친권상실신고와 그에 따른 입양 결정 요인

1) ‘친권상실-입양’에 관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위탁아동의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과 입양률 추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미국 아동복지 정책에서 새롭게 부상한 ‘친권상실-입양’ 정책의 주요 핵심적 쟁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AACWA에서는 가족보존정책이 위탁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항구적 보호 마련책의 근간을 형성한 반면, 1997년 개정된 ASFA에서는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부모 및 제 3자에 의해 총 22개월의 위탁기간을 전제로 한 15개월 안에 친권상실청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가족보존정책’

을 근거로 추진되어 온 ‘가족복귀’의 최우선 명제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권상실선고가 친부모의 잘못된 아동양육에 대한 처벌적 성격(Lincoln, 1976)과 아울러 위탁아동에 대한 항구적 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Adler, 2001; Altsein and McRoy, 2000; Lindsey and Schwartz, 2004). 즉, 친권상실선고 이후 입양은 현재 미국 아동복지에 있어서 가족복귀가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항구적 보호 마련 차원에서 가장 선호되는 정책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양가족”이 친부모가족과 버금가는 아동양육의 기본단위로 급부상하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친권상실선고 이후 위탁아동의 입양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위탁아동의 친권상실선고 이후 입양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 인종, 장애 유무 등의 아동의 특징, 친권상실 이전에 발생한 위탁보호 원인, 그리고 친권상실 이후 제공된 위탁서비스의 특징 중에서 위탁보호 유형, 위탁보호의 도시 소재 유무, 위탁부모의 인종적·민족적 동질성, 위탁가족 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가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 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권상실 이후 위탁아동의 입양 결정요인에 관한 가설검증을 위한 논의에서는 선행연구가 아직 미흡한 요인들도 탐색적 연구를 위해 함께 포함하고 있다. 미국 위탁아동의 친권상실과 관련하여 1999년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이후, AFCARS)데이터가 미국 50개주에서 위탁보호에 관한 자료보고가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친권상실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위탁아동의 입양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친권상실을 목과한 채(Barth, 1997a; Courtney and Wong, 1996) 최초 위탁보호 당시 발생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위탁아동의 입양을 다루는 것이 전부였다. 2003년 Smith(2003)가 AFCARS FY1999 데이터를 이용하여 친권상실 이후 1년간을 추적하여 항구적 보호유형과 관련한 연구보고를 시발로 친권상실과 입양에 관한 연구가 고조된 반면, 아직까지 축적된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탁아동의 친권상실 이후 입양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충분한 실증적 검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탐색적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양은 친부모의 친권이 상실된 이후 새롭게 형성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서, 이는 친부모가 가졌던 권리와 동일한 모든 법적·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성립하게 된다. 특히, 위탁아동의 친권상실과 입양에 있어서 국가는 개별적 권리 주체인 가족을 일정한 권한 하에 개입하여 친부모가족의 소멸과 입양가족의 형성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특징 및 위탁보호 원인과 입양간의 관계를 규명함과 아울러 국가가 위탁보호를 제공하고 입양을 지지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위탁서비스 요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요인

친권상실선고 당시의 아동의 연령은 입양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0세-3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비해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입양에 불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th, Courtney, Berrick, and Albert, 1994; McMurtry and Lie, 1992). 특히, 친권상실신고 이후에도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장기위탁이 최종적인 항구적 보호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Schmidt-Tieszen and McDonald, 1998; Song, 2006). 반면, 영·유아인 경우 친권상실신고 이전에도 선입양가족에 위탁보호 되는 경우가 비교적 높으며, 이에 따라 입양률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Schmidt-Tieszen and McDonald, 1998). 실제로 입양 알선 기관에서도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입양선호도를 보이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Resource Family Support, 2002). 따라서 친권상실 신고 당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입양가능성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의 인종 역시 입양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백인아동에 비해 흑인아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입양되고 있다(Barth et al., 1994; Kemp and Bodonyi, 2002; McMurtry and Lie, 1992; Potter and Keline-Rothschild, 2002; Schmidt-Tieszen and McDonald, 1998; Song, 2006).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소수인종아동이 백인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양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위탁아동의 입양에 있어서 60% 이상이 위탁부모에 의한 것이며(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위탁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백인부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특히, 기존의 입양정책에서 인종적·민족적 배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족으로 입양이 추진되어왔던 것을 보면(Bausch, Robert, and Richard, 1997; Brooks, Barth, Burssiere, and Patterson, 1999) 백인아동이 흑인·히스패닉 아동보다는 입양에 있어서 선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미국 인구사회학적 보고에 의하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가족이 백인 가족에 비해서 빈곤도가 훨씬 높으며(U.S. Census Bureau, 2001), 입양에 있어서는 중산층 이상의 가족을 중심으로 입양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흑인이나 히스패닉 가족이 위탁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신적 지체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위탁아동은 일반 위탁아동들에 비해서 입양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위탁아동의 입양결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th et al., 1994, Courtney and Wong, 1996; Smith, 2003). 특히, 임상 검사를 통해 정신적 지체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판명되어서 특수 장애교육이나 양육이 필요할 경우는 해당 아동의 장애의 심각성에 알맞게 양육하고 입양할 수 있는 입양부모를 섭외하기도 쉽지 않으며(Meezan, Katz, and Russo, 1978), 장애아동의 입양을 위한 별도의 의료지원이나 양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아동장애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임상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판정된 위탁아동의 경우 친권상실 이후 입양 가능성은 일반 위탁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친부모에 의한 위탁보호 요인

친권상실신고 이전에 친부모에 의한 학대유형에 따라서 입양률이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다. 실증적으로 Courtney and Wong(1996)이 캘리포니아에 위탁보호 된 8,625명의 아동들의 학대경험의 유형과 입양률을 조사해 본 결과 신체학대를 경험했던 아동들이 방임을 경험했던 아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성학대의 경험도 입양에 있어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나 성학대가 왜 입양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태지만, 친부모의 학대나 방임의 유형에 따라 친부모의 학대 유형이 입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urtney and Wong(199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아동학대 경험과 입양간의 관계가 적용되리라고 본다.

부적절한 주거는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하여 아동양육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상태이거나 친부모가 노숙상태로 있어서 더 이상 친부모와 함께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상태를 의미한다. 친부모의 주거상태가 아동양육에 적절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아동은 아동발달 측면에서 특히 행동발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urtney, McMurtry, and Zinn, 2004). 이에 따라 입양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Groze, 1996; McGlone, Santos, Kazama, Fong, and Mueller, 2002; Reilly and Platz, 2003) 본 연구에서도 부적절한 주거로 인해 위탁보호 된 아동의 경우 친권상실 이후 입양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능력부족은 아동의 약물중독이나 기타 일탈 등의 아동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친부모가 아동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탁보호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아동양육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위탁아동의 항구적 보호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지만, 아동의 행동발달 혹은 일탈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선입양가족이나 입양가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 입양결정시 이러한 양육의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겪고 있는 위탁가족의 경우 입양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입양 결정률이 낮게 나오고 있다(Groze, 1996; Reilly and Platz, 2003). 또한 입양 이후에도 입양부모의 스트레스 과다에 따른 입양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cGlone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는 친부모의 양육능력부족으로 야기된 위탁보호일 경우 친권상실 이후 입양에 있어서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아동 양육의 책임자인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법적 양육권을 포기하여 위탁보호가 결정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최초위탁보호부터 가족복지보다는 항구적 보호마련을 위한 병행계획("concurrent planing")에 입각하여 입양을 우선하여 항구적 보호계획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Green book, 2000, pp.671-673) 입양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위탁서비스 요인

친권상실선고 이후 위탁서비스에 따라 입양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입양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입양가족이나 일반위탁가족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친·인척위탁가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보다 훨씬 높은 입양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Barth et al., 1994; Courtney and Wong, 1996; Smith, 2003; Song, 2006; Thornton, 1991). 실제로, Smith(2003)와 Song(2006)이 친권이 상실된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입양률을 조사한 결과 선입양가족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일반위탁가족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비해 입양배율이 2배, 친·인척위탁가족에 비해서는 3배 이상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탁서비스 형태에 따른 입양률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도 예상되는 데 선입양가족에 비해 여타 위탁보호 형태의 입양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에 소재한 위탁가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교외나 시골지역에 소재한 위탁가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Courtney and Wong, 1996; Song, 2006; Wulcyn and Hislop, 2002). 이러한 도시와 교외·시골지역간의 입양 가능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도시에 위탁가족나 잠재적으로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시골·교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선입양가족을 보다 용이하게 섭외하거나 입양에 대한 홍보와 입양가족 모집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현재 미국 위탁부모에 의한 위탁아동의 입양 비율은 전체 입양 중에 60%를 넘고 있다(U. S.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Song, 2006). 따라서 어떤 위탁부모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입양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양부모 위탁가족은 한부모 위탁가족에 비해 입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양부모 위탁가족이 한부모 위탁가족보다 아동양육을 위한 시간이나 양육제원 마련에 훨씬 수월할 수 있고, 양부모 위탁가족이 한부모 위탁가족에 비해 입양을 권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위탁아동의 입양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아동이 위탁부모와의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유대감 형성은 가족으로서 유대를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있다(Bowlby, 1969, 1973; Ainsworth, 1991).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 유대 형성에 있어서 위탁아동은 친부모와 맺었던 정서적·정신적 유대감을 위탁부모와의 관계에서 대체할 수 있는 데, 이는 위탁부모와 형성하게 되는 정서적·문화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더욱 발전한다고 보고 있다(Goldstein, Freud, and Solnit, 1973). 실증적으로 친·인척위탁부모에게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친부모에게 양육되었던 환경과 유사한 정서적·문화적 친밀감으로 말미암아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 형성을 일반위탁가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형성하고 유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Chipungu, 1991; Geen and Berrick, 2002; Iglehart, 1994). 이와 마찬가지로 인종적·민족적 배경이 유사한 위탁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인종적·민족적 배경이 다른 위탁부모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비해 정서적·문화적 친밀감이 더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기간동안 가족으로서 친밀감과 유대 형성이 훨씬 용이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위탁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친권상실신고로 말미암아 친부모와 재결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인종적·민족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위탁부모가 그렇지 않은 위탁부모에 비해 입양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친권상실 이전에 경험한 학대유형 뿐 만 아니라 기타 위탁보호 원인과 입양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친부모에 의해 제공된 위탁보호 원인은 친권상실 이후에도 입양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친권상실 이후 제공되는 위탁서비스와 입양간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크게 부각되어온 아동의 인종과 연령의 중요성뿐 만 아니라(Barth, 1997a; Brooks et al., 1999) 위탁보호 실천현장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위탁아동의 입양가능성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실증할 수 없었던 친권상실 이후 제공되는 위탁서비스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친권상실이라는 위탁보호 기간동안 발생하는 아동의 사회적·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시기에 제공되는 위탁서비스의 특징이 입양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위탁보호와 입양에 관하여 현재 미국에서 매년 보고 되고 있는 AFCARS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1998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친권상실을 경험한 위탁아동을 중심으로 4년간의 추적조사가 가능한 32개 주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위탁아동이 친권상실 이후 최대 43개월간의 위탁소요기간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적기간의 상정은 친권상실 이후 2년을 전후하여 입양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서 ASFA 개정이후 항구적 보호마련 차원에서 장기위탁을 줄이고 입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얼마나 충실히 실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친권상실 이후 36개월 이상 장기 위탁보호 된 아동에 대한 항구적 보호마련에 대한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FA 개정의 근본 취지인 친권상실 이후 단기간에 달성된 항구적 보호마련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연구 대상 선정기준으로는 ①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며, ②친권상실신고 당시 아동연령이 14세 미만이어야 하며, ③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동으로 제한하였으며, ④친권상실신고 이후 선입양가족, 일반위탁가족, 친·인척위탁가족, 또는 그룹홈·위탁시설에 보호된 아동에 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아동이나 본토 미국인(Alaska Natives or American Indian)은 제외시켰다. 이것은 대부분의 주에서 아시아계 위탁아동이 1% 내외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토 미국인인 경우에는 위탁보호와 입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아동복지법, 즉 본토 미국인을 위한 아동복지법(the Indian Child Welfare Act of 1978)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을 위해서 친권상실신고 이후 다른 주로 이전된 아동에 대해서도 제외시켰는데, 이것은 다른 주로 이전된 이후 어떤 위탁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또한 최종적인 항구적 보호 결정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는 각 주에서 각각 보고 된 위탁아동에 관한 정보를 4년간 추적했기 때문에, 다른 주로 이전된 아동에 대해서는 다른 주로 옮긴 이후 더 이상의 정보가 해당 자료에서는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른 주로 이전되어 제외된 아동의 비율은 추출 이전의 전체 인원 중에 2%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입양 여부로서 이분변수로 측정하였다. 친권상실신고 이후부터 입양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개월 단위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로는 아동 특징, 위탁보호 원인 및 위탁서비스 특징이 측정되었다. 아동 특징으로서 친권 상실신고 당시 연령, 인종, 장애유무를 측정하였다. 친권상실신고 당시 아동 연령은 0-1세(영아), 2-3세(유아), 4-6세(유치원), 7-9세, 10-14세로 측정되었으며,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0-1세 아동을 기준범주로 분석하였다. 아동의 인종으로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동으로 dummy변수로 측정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백인아동을 기준범주로 분석하였다. 아동의 장애 유무는 임상검사 결과 정신적 지체나 장애, 감성적 장애, 신체적 장애가 판명된 것을 의미하며, 장애가 있을 경우는 1로, 장애가 없는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위탁보호 원인으로는 아동학대 유형, 부적절한 주거, 양육능력부족, 자발적 위탁보호 유무를 측정하였다. 친권상실신고 이전의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방임, 신체학대, 성학대, 부모의 약물중독, 부모의 투옥, 중복학대로 측정되었으며, dummy변수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방임을 기준범주로 분석하였다. 부적절한 주거인 경우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양육능력부족이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자발적 위탁보호는 1로, 공적개입에 의한 위탁보호인 경우는 0으로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입양	1=입양 됨; 0=입양 안됨
	위탁소요기간	개월 단위
아동요인	연령(친권상실시)	0-1세, 2-3세, 4-6세, 7-9세, 10-14세 (더미코딩, 0-1세를 기준범주로 함)
	인종	백인, 흑인, 히스패닉 (더미코딩, 백인을 기준범주로 함)
	장애	1=있음; 0=없음
위탁보호 원인 요인	아동학대	방임, 신체학대, 성학대, 부모의 약물중독, 유기, 부모의 투옥, 중 복학대 (더미코딩, 방임을 기준범주로 함)
	부적절한 주거	1=예; 0=아니오
	양육능력부족	1=예; 0=아니오
	자발적 위탁보호	1=자발적 포기에 의한 위탁보호; 0=공적개입에 의한 위탁보호
위탁서비스 요인	위탁서비스 유형	선입양가족, 일반위탁가족, 친·인척위탁가족, 그룹홈·위탁시설 (더미코딩, 선입양가족을 기준범주로 함)
	도시소재	1=도시소재, 0=교외 및 시골 소재
	위탁가족형태	1=한부모 가족, 0=양부모 가족
	위탁부모의 인종적 동일성	1=동일함, 0=다름

위탁서비스 특징으로는 위탁보호 유형, 위탁보호의 도시 소재 유무, 위탁가족 형태, 위탁부모의 인

중적 동일성이 측정되었다. 위탁보호 유형은 친권상실신고 이후 위탁보호 형태를 의미하며, 선입양가족, 일반위탁가족, 친·인척위탁가족, 그룹홈·위탁시설이 측정되었으며, dummy 변수를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선입양가족을 기준범주로 분석하였다. 위탁보호의 도시소재 유무는 친권상실신고 이후 위탁보호가 도시에 소재해 있으면 1, 시골이나 교외에 소재해 있으면 0으로 부호화하였다. 위탁가족형태는 양부모 가족과 한부모 가족으로 측정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을 1, 양부모 가족을 0으로 부호화하여 분석하였다. 위탁부모와의 인종적 동일성 여부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가 인종적·민족적으로 동일할 경우를 1로, 다를 경우를 0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친권상실을 경험한 위탁아동의 특징, 위탁보호 원인 및 위탁서비스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이원분석에서는 t-test, chi-square test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률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플란 마이어 분석방법(KM)을 이용하였다. KM 분석을 이용한 입양여부를 개월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KM 누적위험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 43개월의 관찰기간동안 각 단위시간당 발생하는 입양률 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KM 분석을 위해서는 우측절단(right censoring)을 사용하였으며, 입양에 관한 censoring으로서는 친·인척보호, 법적 후견인(legal guardianship), 위탁보호 종료(emancipation), 도망(runaway), 또는 아동의 죽음으로 인한 위탁보호의 마침을 포함한다. 또한,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까지 소요되는 위탁보호기간의 분포는 단일한 위탁주기를 가정한 것이다. 이것은,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까지 걸리는 소요기간과 추이를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단일주기를 가정한 방법은 매우 유효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의 인종과 연령으로 층화된 KM 누적 위험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입양률 추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의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입양여부 관련 요인에 대한 다변인 분석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정보와 관측절단된 소요기간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을 이용한 접근법이 횡단분석에 비해 우월한 측면이 있다(Allison, 2000b).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건사 분석의 맥락에서 위탁아동이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 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비례적 위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은 반모수적 측정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매 개월별로 관찰된 입양과 입양되지 않을 조건적 확률을 추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조건적 확률은 위험배율(hazard ratio)로 구해지며 위험배율과 관련된 식은 다음과 같다.

$$h_i(t) = h_0(t) [\exp(\sum \beta_k X_{ik})]$$

$h_0(t)$ 는 미확정적인 시간과 연관된 전체 연구 대상에 대한 기본 위험률이며,

β_k 는 모델에서 k 번째에 해당하는 모수추정치에 대한 값을 말하며,

X_{ik} 은 방정식에서 i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t 번째 시간에 대한 k 번째에 해당하는 변수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model에서는 관찰되어지는 때 단위시간당 비례적인 입양 위험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각 단위시간당 계산되어진 관찰대상 각각의 입양에 관한 위험 배율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모수추정에서는, 부분 가능성 추정방식(partial likelihood estimation)의 특성상 시간에 대한 임의적인 함수값으로 나타나는 상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계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명목변수나 더미변수인 경우는, 위험배율로 환원($\exp(\beta_k)$)되어 해석되는 데, 이것은 입양이 이루어질 위험 배율과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배율의 차이로 해석된다. 등간 혹은 배율 변수로 측정될 경우, 계수를 $100[\exp(\beta_k)-1]$ 로 변환해서 계산하면 해석상 더욱 유의미한데, 이것은 변수 1단위당 변화에 따른 입양가능성에 대한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락 데이터로 인한 분석결과에 대한 오차(bias)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대체방식(multiple imputation, 이후 MI)을 이용하여 누락데이터를 처리하였다. 누락 데이터가 5%이상 발생할 경우, 모수추정치에 있어서 표준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편향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Allison, 2001; Sachfer, 1997). 더욱이, 기존에 흔히 누락데이터 처리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listwise deletion method에 비해 모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가 적고 이에 따라 훨씬 유용한 (efficiency) 모수추정치를 계산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Alliso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S 9.1 version을 이용하여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method를 사용한 MI로 누락데이터를 처리하였다.

4.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

<표 2>에서 <표 4>까지는 아동 특징, 위탁보호 원인 및 위탁서비스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각 표의 제 2열에서는 빈도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제 3열에 제5열까지는 입양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기준으로 각 항목들의 차이를 비교하여 t-test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총 26,895명으로, 미국 32개주에서 1999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위탁보호 가운데 친권상실 신고를 경험한 위탁아동들이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에서는 누락데이터로 인해 25,628명을 총계로 비교분석하였다. 관찰기관 최종일인 2002년 9월 30일까지 총 연구대상 가운데 63.59%(N=16,296)가 입양되었다. 또한,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된 아동과 입양되지 않은 아동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표 2>에서는 친권을 경험한 위탁아동의 특징 및 입양에 따른 이원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백인아동이 39.33%, 흑인아동이 43.52%, 그리고 히스패닉아동이 17.8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흑인아동의 친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친권이 상실된 흑인 위탁아동의 비율을 현재 미국에서 흑인아동이 인구학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흑인 위탁아동이 친권상실을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친권을 상실한 백인아동 중에서 66.40%가 입양되었으며, 흑인아동의 경우 64.74%가 입양되었다. 히스패닉아동의 경우 54.68%가 입양되어서, 상대적으로 히스패닉아동이 여타 인종보다 낮은 비율로 친권상실선고 이후 입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입양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아동의 특징(%)

변수	전체† (N=26,895)	입양됨 (N=16,296)	입양되지 않음 (N=9,332)	Chi-Square / t-test
인종				
백인 (White, Non-Hispanic)	39.33	66.40	33.60	$\chi^2=183.76^{***}$
흑인 (Black, Non-Hispanic)	43.52	64.74	35.26	
히스패닉 (Hispanic)	17.87	54.68	45.32	
연령 (친권상실시)				
0-1세 (영아)	42.63	61.93	38.07	$\chi^2=85.95^{***}$
2-3세 (유아)	34.28	65.01	34.99	
4-6세 (유치원)	16.94	64.55	35.45	
7-9세	4.85	57.89	42.11	
10-14세	1.31	44.65	55.35	
평균 (표준편차)(세)	2.38 (2.16)	2.35 (2.06)	2.42 (2.33)	t=2.49***
장애	15.71	62.89	37.11	$\chi^2= 54.95^{***}$

*p<.05 **p<.01 ***p<.001

† 누락데이터 (missing data)로 인해 총 분석인원의 차이가 있음.

전체 분석 대상 중에서 3세 이하의 아동이 2/3를 넘고 있다. 특히, 0-1세 영아가 4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3세의 유아가 34.28%를 차지하고 있다. 4-6세 아동이 16.9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7-9세 아동이 4.85%를, 10-14세 청소년기 아동은 단지 1.31%에 불과하다.

입양여부와 관련해서 비교한 결과 6세 이하의 아동과 7세 이상의 아동 사이에는 입양률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0-1세 영아 중에서는 61.93%, 2-3세 유아 중에서는 65.01%, 4-6세 유치원 아동 중에서 64.55%가 입양되어서, 친권상실 선고 당시 0-6세까지의 아동 중에 60%이상 입양되었다. 반면, 7-9세 아동의 경우 57.89%가 입양되었으며, 10-14세 아동의 경우는 44.6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로 입양되었다. 따라서 입양에 있어서 친권상실선고 당시 아동의 연령이 6세 이하이냐 아니냐에 따라 입양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분석 대상 중의 15.71 % 아동이 정신적·신체적 장애나 지체 판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에서 62.89%가 입양되었다.

<표 3>에서는 위탁보호 원인에 따른 특징과 입양여부와 관련한 이원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위탁아동의 아동학대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 되는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 역시 방임에 의한 위탁보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 연구대상 가운데 47.66%가 방임에 의해 위탁보호가 결정되었으며, 다음으로는 25.39% 아동이 복합적인 형태의 학대를 경험한 중복학대가 차지하고 있다. 신체학대(7.66%)나 부모의 약물중독(3.24%)으로 인한 위탁보호가 그 다음을 차지한 반면, 성학대(1.54 %), 유기(1.28%), 부모의 투옥(1.02 %)으로 인해 위탁보호 된 사례는 2%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입양률을 비교해 보면 방임을 경험한 위탁아동 중에 71.01%가 입양되어서,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입양되었다. 상대적으로 성학대를 당했던 위탁아동 중에서 52.14%가 입양됨으로써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입양되었다.

<표 3> 입양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위탁보호 원인유형(%)

변수	전체† (N=26,895)	입양됨 (N=16,296)	입양되지 않음 (N=9,332)	Chi-Square
아동학대 경험 유형 ²⁾				
방임	47.66	71.01	28.99	$\chi^2=438.88^{***}$
신체학대	7.66	60.32	39.68	
성학대	1.54	52.14	47.86	
부모의 약물중독	3.24	66.17	33.83	
유기	1.28	55.82	44.18	
부모의 투옥	1.02	57.58	42.42	
복합적 학대	25.39	61.93	38.07	
부적절한 주거	4.98	61.63	38.37	$\chi^2=21.71^{***}$
양육능력부족	12.55	55.60	44.40	$\chi^2=288.67^{***}$
자발적 위탁보호	3.25	56.56	43.44	$\chi^2=36.71^{***}$

*p<.05 **p<.01 ***p<.001

† 누락데이터 (missing data)로 인해 총 분석인원의 차이가 있음.

친부모의 주거환경이 아동양육에 부적절하다고 판명되어 위탁보호 된 사례는 전체 분석 대상 중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61.63%의 아동이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 대상의 12.55%가 친부모의 아동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해 위탁보호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 55.60%가 입양되었다. 이것은 전체 입양률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입양되었음을

- 2)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아동학대유형에서는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해당하는 아동학대만을 나타낸 것이다. 중복학대를 함께 반영한 아동학대 유형비율로는 방임(80.43%), 신체학대(15.75%), 성학대(5.82%), 부모의 약물중독(22.65%), 유기(5.04%), 부모의 투옥(4.68%)이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표 2>에 나타난 단독 아동학대 유형과 비교하면 중복학대의 대다수가 방임과 부모의 약물중독에 의한 학대임을 유추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친부모에 의한 위탁보호 요인 중에 마지막으로 자발적 위탁보호가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3.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대부분(96.75%)이 공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위탁보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56.56%가 입양 되었다.

<표 4>에서는 위탁보호 서비스의 특징 및 입양여부와 관련한 이원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위탁보호 형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친권상실선고 이후 위탁보호 형태의 분포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위탁보호 형태에 따라 입양률에 있어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전체 연구 대상 중에서 절반(49.58%)이 친권상실선고 이후 선입양가족에서 보호되었으며, 1/3 아동(33.87%)이 일반위탁가족에 의해 보호되었다. 반면, 위탁아동의 13.39%가 친·인척위탁가족에 의해, 위탁아동의 3.16%가 그룹홈·위탁시설에서 보호됨으로써 친권상실 이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위탁보호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입양률과 관련해서 선입양가족에 보호된 아동 중에 84.58%가, 일반위탁가족에 보호된 아동 중에 46.16%가 입양되었다. 따라서 선입양가족에 보호된 경우 5명중 4명 이상이 입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친권상실선고 이후에도 친·인척가족에 보호된 경우 36.96%가 입양되었으며, 그룹홈·위탁시설에 보호된 아동 중에서는 4.10%만이 입양되었다. 따라서 친권상실선고 이후 비록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로 친·인척가족이나 그룹홈·위탁시설에 보호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저조한 입양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친권상실선고 이후 친·인척가족이나 그룹홈·위탁시설에 보호된 위탁아동의 경우 장기위탁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 입양여부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위탁서비스의 특성(%)

변수	전체† (N=26,895)	입양됨 (N=16,296)	입양되지 않음 (N=9,332)	Chi-Square
위탁서비스 유형				
일반위탁가정	33.87	46.16	53.42	$\chi^2=5845.68^{***}$
친인척위탁가정	13.39	36.96	63.04	
선입양가정	49.58	84.58	15.42	
그룹홈/위탁시설	3.16	4.10	95.90	
도시소재 위탁시설	49.98	74.68	25.32	$\chi^2=1560.39^{***}$
교외/시골소재 위탁시설	50.12	51.04	48.96	
양부모 위탁가족	54.47	69.91	30.09	$\chi^2=338.17^{***}$
한부모 위탁가족	45.53	58.05	41.95	
동일한 인종 위탁부모	72.84	70.28	29.72	$\chi^2=88.72^{***}$
다른 인종 위탁부모	27.16	63.12	36.88	

* $p<.05$ ** $p<.01$ *** $p<.001$

† 누락데이터 (missing data)로 인해 총 분석인원의 차이가 있음.

전체 연구 대상 가운데 도시에 소재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49.98%로써 이들 중 74.68%가 입양을 경험했다. 반면, 교외나 시골에 소재한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중에서 51.04%가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족형태와 관련해서는 54.47%가 양부모 가족에 의해, 45.53%가 한부모 가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양부모 가족 중에서 69.94%가 위탁아동의 입양을 결정한 반면 한부모 가족 중에서는 58.04%가 위탁아동의 입양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인종적·민족적 동일성 유무와 관련하여 72.84%가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위탁아동과 인종적·민족적으로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위탁아동과 해당 위탁부모 간에 인종적·민족적 배경을 유사하게 맞추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과 관련하여 인종적·민족적 배경이 동일한 위탁부모 중에서 70.28%가 해당 위탁아동을 입양했다. 반면, 인종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위탁부모 중에서는 63.12%가 해당 위탁아동을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는 입양 및 기타 항구적 보호 결정에 대하여 위탁보호기간과 관련하여 보여주고 있다.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까지 평균 13.15(표준편차: 8.1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입양된 아동 중 50%가 친권상실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입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입양 및 항구적 보호결정과 위탁보호기간 (N=26,365)

항구적 보호 결정	%	친권상실 이후 위탁보호기간	
입양	65.75	평균 (표준편차)	13.15(8.12)
		중간값	12.0
친인척보호 및 법적 후견인	4.41	평균 (표준편차)	13.22 (9.12)
		중간값	12.0
장기위탁 (2002년 9월 30일까지)	32.83	평균 (표준편차)	36.28 (3.47)
		중간값	36.0

† 누락데이터 (missing data)로 인해 총 분석인원의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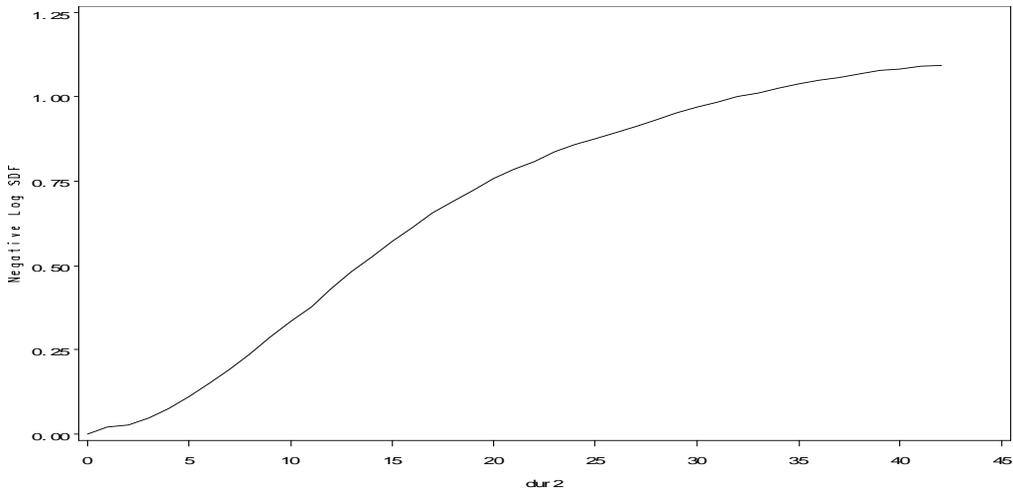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이 되지 않은 아동 중에서 친·인척보호나 제 3자에 의한 법적 후견인이 결정된 아동은 총 연구대상자 중에 4.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친권상실신고 이후 항구적 보호결정까지 13.22(표준편차: 9.1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들 중 50%가 12개월 이내에 입양이 아닌 기타 항구적 보호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된 아동과 기타 항구적 보호마련이 결정된 아동의 친권상실신고 이후 위탁보호 소요기간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친권상실신고 이후 항구적 보호마련을 위한 동시계획(concurrent planning) 하에서 입양과 여타 항구적 보호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놀라운 것은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이나 다른 항구적 보호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 위탁보호 된 아동이 총 연구대상 가운데 32.83%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최종 관찰일인 2002년 9월30일까지 평균 36.28(표준편차: 3.47)개월을 친권상실선고 이후 위탁보호 상태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입양에 따른 KM 누적위험함수

본 장에서는 친권상실선고 이후 입양률 추이를 KM 누적위험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KM 분석은 위탁소요기간에 따른 입양률추이를 기술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탁기간과 입양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보이고자 하는 KM 누적위험함수의 총 관찰기간은 친권상실선고 이후 43개월이다.

<그림 1>에서는 입양에 따른 KM 누적위험함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연구 대상 중의 25%가 10개월 이내에 입양되었으며, 50%가 19개월 이내에 입양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권상실선고 이후 3개월-19개월까지 위탁기간이 지남에 따라 입양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증가함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략 20개월 이후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증가함수를 보이고 있는 데, 이것은 누적함수의 특성상 입양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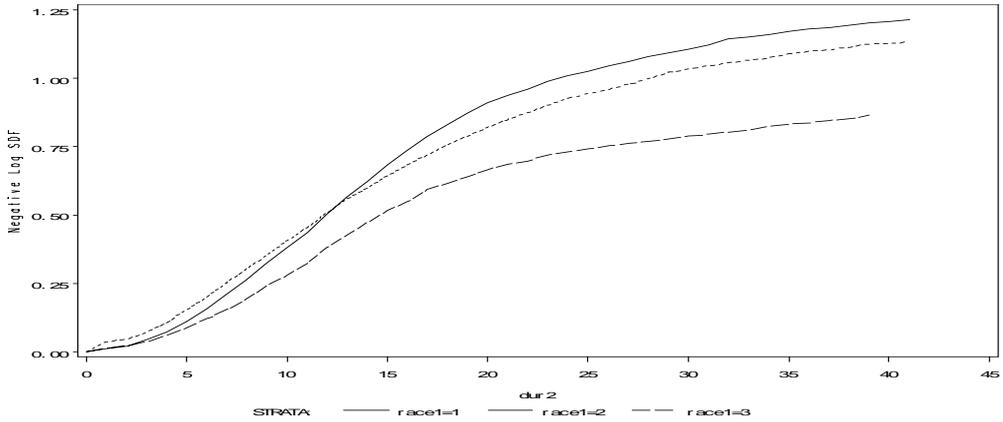


† 누락데이터 (missing data)로 인해 총 분석인원의 차이가 있음.

<그림 1> KM 입양 누적위험함수 그래프 (N=25,814*)

<그림 2>에서는 아동 인종에 따른 층화방법을 통해 상대적으로 다른 입양률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동 간에 누적 위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01$). 특히, 친권상실 선고 13개월 이후 백인 아동과 흑인 아동 간에 입양에 따른 KM 누적 위험함수가 교차하고 있는 데, 이는 친권상실선고 초기에는 흑인아동의 입양률이 백인아동에 비해 높다가 13개월 이후에는 백인아동의 입양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흑인아동의 입양률을 앞지르고 있음을 의미한

다. 히스패닉아동은 흑인아동이나 백인아동과 비교하면 위탁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양률에 있어서 점차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며 대략 20개월이 지난 후에는 거의 입양률이 증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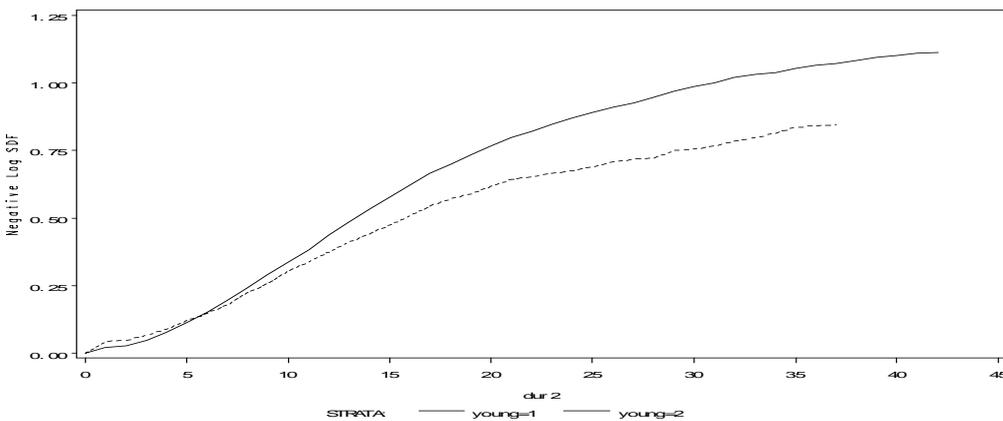


wilcoxon chi-square=164.153, df=2, p<.0001

† 누락데이터 (missing data)로 인해 총 분석인원의 차이가 있음.

<그림 2> 아동의 인종에 따른 총화 KM 입양 누적위험함수 그래프 (N=23,369†)

<그림 3>에서는 아동의 친권상실신고 당시 연령을 6세 이하와 7세 이상으로 총화하여 KM 입양 누적함수 그래프를 비교하고 있다. 이는 <표 2>의 기술적 통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6세를 전후해서 입양률에 차이가 있음을 토대로 입양률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wilcoxon chi-square= 26.970, df=1, p<.0001

† 누락데이터 (missing data)로 인해 총 분석인원의 차이가 있음.

<그림 3> 아동의 연령에 따른 총화 KM 입양 누적위험함수 그래프 (N=25,768†)

친권상실 선고 6개월 이후 6세 이하의 아동의 입양률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7세 이상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지날수록 6세 이하의 아동과 7세 이상의 아동간의 입양률의 차이는 계속 커지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p < .0001$).

3) 입양에 대한 비례적 위험회귀모형 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아동 특징, 위탁보호 원인 및 위탁서비스 요인에 따른 친권상실선고 이후 입양가능성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중대체방법을 이용하여 누락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는 총 25,895명을 분석하였다. <표 6>에서는 입양에 대한 비례적 위험회귀모형을 이용한 결과 나타난 계수와 표준오차, 위험배율을 보고하고 있다.

위탁아동의 입양에 관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인종적 특성은 입양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과 시간을 통제한 결과, 백인 아동에 비해 흑인 아동은 입양 위험배율이 .453배($p < .001$), 히스패닉 아동이 .797배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흑인 아동의 경우 12개월 이내 위탁아동의 경우는 백인 아동에 비해 입양 위험배율이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친권상실 이후 위탁보호 기간 12개월 이내에는 오히려 입양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종과 위탁보호 기간에 따라 입양가능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친권상실선고 당시의 연령과 관련해서 0-1세 영아에 비해 2-3세의 유아가 입양 위험배율이 .973배($p < .05$)로 근소하게 입양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6세의 유치원아동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입양 위험배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는 데, 7-9세 아동이 .691배 ($p < .001$), 10-14세 청소년이 .618배($p < .01$)의 입양 위험배율을 보이고 있어서 7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0-1세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입양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세 이상 아동의 경우 6개월 이내 위탁보호기간내의 입양배율이 7개월 이상 위탁보호기간에 비해 7배의 입양 위험배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 < .001$). 따라서 친권상실 당시 7세 이상의 아동일 경우 6개월 이내 입양이 되지 않으면 이후 입양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임상적으로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나 지체가 판명된 경우 입양률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입양 위험배율이 .976배로($p < .001$), 장애가 없는 위탁아동에 비해 입양가능성이 근소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권상실선고 이전 아동학대 유형과 관련하여 입양 가능성을 살펴보면, 방임에 비해 신체학대가 .606배($p < .5$), 성학대가 .773배($p < .001$)로 나타나서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입양 가능성이 낮았다. 부모의 약물중독으로 위탁보호 된 아동의 경우 방임을 경험한 아동과 거의 유사한 입양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p < .01$). 그러나 기타 아동학대 유형의 경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부적절한 주거요인은 입양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입양 위험배율이 1.041배로, 매우 근소하게 높은 입양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친부모의 양육능력부족으로 위탁보호된 아동

의 경우 입양 위험배율이 .950($p < .001$)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입양 가능성이 근소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양육보호와 공적개입에 의한 양육보호간의 친권상실 이후 입양 가능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위탁서비스 요인이 입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위탁보호 유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선입양가족에 보호된 아동에 비해 일반위탁가족에 보호된 아동의 경우 입양 위험배율에 있어서 .506배($p < .001$), 친·인척위탁가족에 보호된 아동이 .405배($p < .001$), 그룹홈·위탁시설에 보호된 아동이 .070배($p < .001$)의 입양 위험배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입양가족에 보호된 아동이 어느 여타 위탁보호 형태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입양배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보고 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도시에 소재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이 교외나 시골지역에 소재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비해 1.415배의 입양 위험배율을 보이고 있다($p < .001$). 또한, 동일한 인종적·민족적 배경을 공유한 위탁부모가 인종적·민족적 배경이 다른 위탁부모에 비해 1.278배($p < .001$)의 입양 위험배율을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입양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친권상실신고 이후 인종적·민족적 동일성을 가진 위탁부모에 배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입양에 있어서 훨씬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탁가정의 형태와 관련하여 한부모 위탁가족이 위탁아동을 입양할 위험배율이 양부모 위탁가족에 비해 .815배에 그치고 있다($p < .001$). 이것은, 친권상실신고 이후 양부모 위탁가족이 한부모 위탁가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입양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입양에 관한 비례적 위험모형(Cox Proportional-Hazards Model)
(다중대체방식(Multiple Imputation)을 이용)* (N=25,997)

변수	계수(표준오차)	위험배율
<u>백인 (기준범주)</u>		
흑인	-.791(.027)***	.453
흑인*12개월 이내 위탁보호	2.131(.035)***	8.423
히스패닉	-.227(.037)***	.797
<u>0-1세 (기준범주)</u>		
2-3세	-.027(.019)*	.973
4-6세	-.003(.025)	.997
7-9세	-.369(.046)***	.691
10-14세	-.481(.086)**	.618
7세 이상*6개월 이내 위탁보호	1.960(.079)***	7.099
장애	-.034(.035)***	.976
<u>방입 (기준범주)</u>		
신체학대	-.050(.027)*	.606
성학대	-.258(.044)***	.773
부모의 약물중독	.093(.032)**	1.097
유기	-.021(.043)	.979
부모의 투옥	-.011(.045)	.989
복합적 학대	-.032(.035)	.969
부적절한 주거	.041(.052)*	1.041
양육능력부족	-.051(.041)***	.950
자발적 양육보호	-.035(.052)	.966
<u>선입양가족 (기준범주)</u>		
일반위탁가족	-.682(.019)***	.506
친·인척위탁가족	-.903(.032)***	.405
그룹홈/위탁시설	-2.659(.109)***	.070
도시소재 위탁보호	.537(.018)***	1.711
인종적으로 동일한 위탁부모	.347(.029)***	1.415
한부모 위탁가족	-.204(.020)***	.815

*p<.05 **p<.01 ***p<.001

† 다중대체방식(MI)을 이용한 최종분석에서는 일반회귀분석모형의 모형적합도 테스트에서 나타나

는 $-2 \text{ Log Likelihood}$ 값이 보고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형 적합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최종분석에서 각 변수의 자유도(d.f.)값이 각각 100을 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분석을 위해서 100회의 다중 대체를 통해 최종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각 변수의 자유도가 100을 모두 상회하였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국 위탁보호와 입양에 관한 AFCARS 패널데이터, FY1999-FY2002 자료를 이용하여 위탁아동이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까지 소요되는 위탁보호기간에 따른 입양률 추이와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여부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ASFA 이후에도 아동의 연령이나 인종, 장애여부에 따른 입양률에 있어서 차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친부모에 의한 위탁보호요인이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여부에 있어서도 연관되어 있음이 알 수 있었다. 친권상실신고 이후 위탁서비스 요인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입양여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따라서 입양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권상실신고 이후 적절한 위탁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한국 위탁아동의 친권상실 및 입양에 관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권상실신고 이후 입양까지 소요되는 위탁기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한 결과 3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급속히 입양률이 상승했으며, 이후 오히려 입양률이 감소되었다. 또한, 입양을 경험한 아동 중의 절반 이상이 친권상실이 선고된 이후 13개월 이내에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탁아동의 친권상실 이후 1년여 소요되는 위탁보호 기간이 입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위탁아동의 친권상실신고 이후 바로 항구적 보호마련 계획에 따라 입양가족 및 입양절차에 따른 입양이 성취되지 못하면 위탁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위탁아동의 입양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친권상실신고 이후 본 연구대상의 60%이상이 36개월 이내에 입양이 되었으며, 4% 내외의 아동이 입양이 아닌 친·인척보호나 법적 후견인에 의한 항구적 보호마련이 이루어졌다. 이는 ASFA에서 친권상실이 입양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입양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무제한의 가족복귀노력으로 인한 장기위탁보호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어느 정도 정책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의 1/3이 항구적 보호마련을 이루지 못한 채 36개월 이상 장기위탁 상태에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친권상실 이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입양이 어려울 경우 친·인척보호나 법적 후견인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위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또한 현재 한국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아동을 부모와 격리 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보호의 부족이 친권 제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논의(오정수 외., 2006)에 있어서 아직까지 친권개입 이후 위탁아동에 대한 친권상실 및 입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입양이 사회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제도권 내의 활성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친·인척보호 및 법적 후견인 제도를 친권개입과 관련하여 함께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친권상실 이전의 아동학대 유형과 입양과 관련해서는 신체학대나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양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 역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왜 신체학대나 성학대가 방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입양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친권상실 이후에도 친부모의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입양률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이 친권상실신고 이전에 친부모에게 어떤 유형의 학대를 받았느냐에 따라 친권상실 이후 입양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친권상실신고 이전에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항구적 보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체학대와 성학대의 낮은 입양 가능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친권개입 이후 어떠한 입양서비스를 받고 있는냐에 따라서 아동의 입양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힐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친권상실신고 이후 위탁보호 형태에 따라서 입양가능성이 매우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친권상실 이후 시설에 보호된 아동이 선입양가족이나 일반 위탁가족에 보호된 아동에 비해 현격히 낮은 입양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한국의 위탁보호 현장에서 시설보호가 주요한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최우선 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아동이 가족의 형태로 양육되어질 때 가장 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정책적 견지에서 뿐 만 아니라 공적 친권개입에 따른 항구적 보호 마련 차원에서도 시설위주의 보호보다는 위탁가족이 고무적이며 이에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선입양가족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방안은 필요하며, 이것은 친권상실 이후 입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가족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모색된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위탁가족이 가족복귀 이전에 제공되는 단기적인 위탁보호 뿐만 아니라 항구적 보호마련 특히 입양을 활성화하는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에서 당면하고 있는 가족해체와 아동 학대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증가로 인한 정책적·실천적 대안 마련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가족의 재결합에 있으며, 친가족복귀가 어려운 경우 친권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장기위탁의 가능성을 염두한 항구적 보호마련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입양가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친권상실신고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장기위탁아동이 1/3을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감안하면, 현재 한국이 미국에 비해 입양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항구적 보호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친권상실이 필요한 경우 입양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구적 보호 유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친·인척보호나 법적 대리인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항구적 보호마련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미국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아래 다각적인 항구적 보호마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상용. 1995. "친권의 상실신고" 『가족법연구』 9: 279-297.
- 김유미. 1997. "현행 친권상실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응책." 『가족법연구』 11: 333-358.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5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오정수·이혜원·이호균·정익중. 2006.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적 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29-56.
- 이호균. 2006. "아동학대의 실태 및 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20: 163-192.
- 최진섭. 2002. "친권법의 쟁점과 개정 방향." 『가족법연구』 16: 87-121.
- Adler, L. S. 2001. "The meanings of permanence: A critical analysis of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of 1997." *Harvard Journal on Legislation* 38: 1-36.
- Adoption and Safety Families Act of 1997, P. L. 105-89. 42. U. S. C. A. §§670 *et seq.* (West, 1994).
-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of 1980. 42. U. S. C. A. §§620 *et seq.* (West, 1994).
- Ainsworth, M. D. 1991. "Attachments and other affectional bonds across the life cycle". pp. 33-51. in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edited by C. M. Parkers, J. Stevenson-Hinde, and P. Marris. London: Tavistock/Routledge.
- Allison, Paul D. 1984a.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_____. 2000b.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North Carolina: SAS Institute Inc.
- _____. 2001c. *Missing data: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Altsein, H., and McRoy, R. 2000. *Does family preservation serve a child's best interest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Avery, R. J. 1999. "Identifying obstacles to adoption in New York state's out-of-home care system". *Child Welfare* 78: 653-671.
- Barth, R. P. 1997a. "Effects of age and race on the odds of adoption versus remaining in long-term out-of-home care". *Child Welfare* 76: 285-308.
- _____. 1997b. "Permanent placements for young children placed in foster care: A proposal for a child welfare services performance standar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9: 615-631.
- Barth, R. P., Courtney, M., Berrick, J., and Albert, V. 1994. *From child abuse to permanency planning: Child welfare services pathways and placements*. Hawthorn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Bausch, R. S., and Richard T. Serpe. 1997. "Perceptions of negative outcomes of interethnic adoption of Mexican children." *Social Work* 42(2): 136-43.
- Berry, M. 1998. "Adoption in an era of family preserv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 1-12.

- Beyer, M., and Wallace J. Mlyniec. 1986. "Lifeline to biological parents: Their effect on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nd permanence." *Family Law Quarterly* 20: 233-25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New York: Basic Books.
- _____.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New York: Basic Books.
- Brooks, D. Sigrid James, and Richard P. Barth. 2002. "Preferre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n need of adoption: Is there a demand for available foster children?" *Social Service Review* 37: 575-602.
- Brooks, D., R. P. Barth, A. Bussiere, and P. Glendora. 1999. "Adoption and Race: Implementing the Multiethnic Placement Act of 1994 and the Interethnic Adoption Provisions." *Social Work* 44: 167-178.
- Chipungu, S. 1991. "A value-based policy framework." pp. 290-305. in *Child Welfare: An Africentric perspective*, edited by J. E. Everett S. S Chipungu, and B. R. Leashor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Courtney, M. E., Steven L. McMurtry, and Andrew Zinn. 2004. "Housing problems experienced by recipients of child welfare services." *Child Welfare* 83: 383-421.
- Courtney, M. E., and Yin-Ling Irene Wong. 1996. "Comparing the timing exit from substitute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 307-320.
- Geen, R., and Jill D. Berrick. 2002. "Kinship care: An evolving service delivery op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4: 1-14.
- Goldstein, Joseph, Anna Freud, and Albert J. Solinit. 1973. *Beyo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Groze, V. 1996. "A 1 and 2 year follow-up study of adoptive families and special needs childre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 57-82.
- Iglehart, A. P. 1994. "Kinship foster care: Placement, service and outcome issu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6: 107-122.
- Kemp, S. P., and Jami M. Bodonyi. 2002. "Beyond termination: Length of stay and predictors of permanency for legally free children." *Child Welfare* 81: 58-86.
- Lincoln, J. H. 1976. "Model statute for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Juvenile Justice* 27: 3-8.
- Lindsey, D., and Ira M. Schwartz. 2004. "Advances in child welfare: Innovations in child protection, adoption and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999-1005.
- Lowry, M. R. 2004. "Putting teeth into ASFA: The need for statutory minimum standard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1021-1031.
- Meezan, William, Sanford Katz, and Eva M. Russo. 1978. *Adoptions without agencies: A study of independent adoptions*. New York: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McGlone, M., Linda Santos, Lynne Kazama, Rowena Fong, and Charles Mueller. 2002. "Psychological stress in adoptive parents of special-needs children." *Child Welfare* 81: 151-171.
- McMurtry, S. L., and Gwat-Yong Lie. 1992. "Differential exit rates of minority children in foster care."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8: 42-48.
- National Center for Resource Family Support. 2002.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resource

- families: The promise and paradox. Washington, D.C. <http://www.casey.org/Resources/Archive/Publications/RecruitmentRetentionResourceFamilies.htm>.
- Potter, C. C., and Susan Keline-Rothschild. 2002. "Getting home on time: Predicting timely permanence for young children." *Child Welfare* 81:123-150.
- Reilly, T. and Laurie, Platz. 2003.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families who adopt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 empiric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5: 781-803.
- Roberts, D. 2002. *Shattered Bonds*. NY: Basic Civitas Books.
- Schmidt-Tieszen, A., and Thomas, P. McDonald. 1998. "Children who wait: Long term foster care or adop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 13-28.
- Schafer, J. L. 1997. *Analysis of incomplete multivariate data*. London: Chapman & Hall.
- Smith, B. D. 2003. "After parental rights are terminated: Factors associated with exiting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5: 965-985.
- Song, M. 2006. (dissertation).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nd adoption in foster care*.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Thornton, J. L. 1991. "Permanency planning for children in kinship foster homes". *Child Welfare* 70: 593-601.
- U. S. Census Bureau. 2001.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http://www.census.gov/prod/2001pubs/p60-214.pdf>.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1. AFCARS Reports #2. <http://www.acf.hhs.gov/programs/cb/publications/afcars/apr2001.htm>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s Bureau. 1999-2002. <http://www.acf.hhs.gov/programs/cb>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8-2000. *Green Book*. <http://www.acf.dhhs.gov/programs/cb/publications>.
- Wulczyn, F., & Kristen B. Hislop. 2002. *Adoption dynamics: The impact of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Chicago, IL: the Chapin Hall Center for Children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iming and Risk Factors of Adoption for Legally-Free Foster Children after Having Parental Rights Terminated in the U. S.

Song, Min-Kyoung

(Research Fellow, the Field Center for Children Policy,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iming and th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doption of legally-free foster children. The sample of the study was drawn from foster care files of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AFCARS) in 32 states between October 1998 (FY 1999) and September 2002(FY 2002). The timing post-TPR to adoption was examined by plotting the Kaplan-Meier cumulative hazard function for adoption and by plotting the KM hazard functions stratified by child's race and child's age at TPR.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adoption of legally-free foster children after TPR.

The hazard of adoption was very low immediately after TPR but increased steadily starting at 3 months and then declined after 20 months. The cumulative hazard functions for White non-Hispanic children and Black non-Hispanic children crossed over at 13 months after TPR.

Racial minority status, older age, and disabilit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hazard of adoption. Physical abuse, sexual abuse had the lower hazard for adoption compared by neglect. Caretaker's inability to cope had the slightly lower hazard for adoption whereas inadequate housing showed the slightly greater hazard for adoption. Characteristics of foster care services turned into be powerful predictors of adoption. Specifically, legally-free children placed in pre-adoptive homes, those who shared the same racial/ethnic background with their foster caretakers, and those who were placed in two-parent families have a greater likelihood of adoption.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foster care service provisions after TPR to facilitate adoption of legally-free foster children. Furthermore, a more substantial resources and targeted support for foster children who experience physical abuse and sexual abuse in need of adoption should be provided for

moving the foster children into permanency.

Key words: Foster car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doption, Permanency outcomes,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model

[논문접수일 2006. 11. 21. 게재확정일 2007. 1. 18.]